

보도시점 2026. 6. 29.(월) 배포 즉시

노동부장관-전국 지방관서장, 온열질환·추락 위험 건설현장 일제 불시점검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추락사고 핵심 안전수칙」 현장 이행 확인
- 혹서기 지방관서장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 불시점검 강화 추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6월 29일(월) 14시,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응급실로 내원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은 노동자의 주의력을 저하시켜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폭염 취약업종인 건설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추락사고 핵심 안전수칙**」이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신고

** ①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②개구부 덮개 설치, ③안전대·안전모 착용

점검 결과,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최상층 알폼거푸집 설치 작업장소에 그늘진 장소와 시원한 물이 마련되지 않음 ▲ 이동통로와 지하층 이동식 비계 작업구간에 안전난간 미설치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에게도 불시 점검을 긴급 지시하면서, 여름철 폭염·질식 및 동일·반복 재해 근절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후 재난이지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면 온열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또한 “추락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덮개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대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발생하므로 한순간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무더위 속에서 작업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위험징후가 보이면 작업을 즉시 멈추고 충분한 휴식과 정비를 거치는 것이 가장 빠른 작업이다”라고 노사 모두에게 당부했다.

- 붙임 1.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2.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12대 핵심 안전수칙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나상명 (044-202-8881) 이근배 (044-202-8882) 홍현종 (044-202-8945)
	안전보건감독국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담당자	연구관 주무관	민병윤 (044-202-8943) 이재은 (044-202-8940)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과 장	신백우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현건 (044-202-8891) 한진우 (044-202-8895)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외국어 번역본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체감온도 계산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물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장치



- ✓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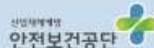
-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OPEN

공공기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5대 중대재해+폭염대비

12대 핵심 안전수칙

추락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추락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



개구부 덮개 고정 설치

부딪힘



작업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작업지휘자 배치

부딪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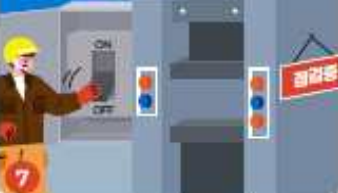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및 작업장 정리 정돈

끼임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끼임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잠금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화재·폭발



용접 시 불티 비산방지 철저 및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폭발



소화설비 및 가연물 관리 철저

질식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측정 및
작업 중 적정공기 유지(환기)

질식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폭염



5대 기본 수칙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